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498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[redacted]

피고보조참가인 [redacted]특별시장

[redacted]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. 6. 17. 선고 2015구합55387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12. 13.

판 결 선 고 2019. 1. 31.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3.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,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1

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11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78,336,000원, 농어촌특별세 33,916,800원, 지방교육세 67,833,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직권으로 판단한다.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).

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. 11. 29.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.

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(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,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,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1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문주형

판사 이수영